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작업흐름 분석*

- 식사 및 목욕공간을 중심으로 -

Daily Living Service Flowing in Skilled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cused on Dining and Bathing Area-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 및 실내계획 전공

전임강사 이민아**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Kunsan National University

Full Time Lecturer : Lee, Min-A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efficient space use in the dining and bathing area through the analysis of service flowing. Four researchers observed the service flowing and the using behavior at those area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Dining service was proceeded as resident moving, waiting, meal serving, dining, moving and arranging in order. The waiting stage was one of the problematic processes since the staffs made the residents wait too long at a fixed position. The program right before the meal serving will be helpful for reducing tediousness of the elderly residents. Another problem was that the area was not big enough for the meal serving. The legal regulation is needed to prescribe for the size of dining area per resident. The flowing of bathing service was proceeded as staff preparation, moving, waiting, undressing, bathing, drying, dressing, moving and arranging in order. There were more problems in the dressing area than in the bathing area. The elderly with stretcher or wheelchairs had difficulty in entering the narrow doorway. The dressing area was so crowded with the staffs, undressed elderly, dressed elderly, and other laundries. The division of dressing and undressing area is required to avoid the confusion of the users in the area.

▲주요어(Key Words) : 노인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for the elderly), 식사서비스(Dining service), 목욕서비스(Bathing service)

1. 서 론

노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노령화에 의해 수반되는 다양한 질병과 퇴행, 정신적 무기력증 및 우울증을 겪게 된다(김태희, 2001). 이러한 노화 과정을 겪을 때는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지원과 적절한 기관에 의한 공식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 지원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특히, 치매, 중풍, 기타 근골격계 질환 등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식사나 목욕과 같은 가벼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는데 장애가 생겨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위와 같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 중증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이 시설들은 입소노인을 위해 일상생활관련 지원 서비스와 신체재활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참여

* 이 논문은 2003년도 군산대학교 신입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이민아 (E-mail : leema@kunsan.ac.kr)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본생활인 식사, 착의 및 탈의, 목욕, 이동, 배설 등에 대한 조력활동을 말한다. 물리적인 재활치료나 사회참여 프로그램은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그 일정과 과정, 내용, 그리고 물리적 공간 및 환경 등이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반면, 보다 자주 발생하게 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실제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방식이나 활동 과정 및 흐름, 그리고 관련 공간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의 판단에 의지하는 실정인데, 그 특성상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노인의 자존감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입소노인의 이용행태를 반영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공간이나 작업흐름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고, 대부분 법규 및 제이론 고찰을 통해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무장애 설비계획에 집중되어 있었으며(유운선, 2000; 장맹식, 2003; 장섭, 2002), 실질적인 행동관찰을 통한 공간계획의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가 진행되는 공간의 이용행태를 포함하는 작업흐름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간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 및 목욕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식사 및 목욕서비스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목표는 노인의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한 가장 근본적인 행동, 즉 식사, 목욕, 배설, 이동 등과 같은 행동의 제약에 대해 일정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것이다(정지영·장승재, 2002; 정무웅·정혁진, 2003). 김상범(1999)은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의 종류로 식사, 목욕, 배설, 이동, 가사활동 서비스를 들었고, 이 중 식사와 목욕 서비스를 노인시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상생활 서비스 관련 공간으로는 식당, 엘리베이터 혹은 경사로, 조력욕실, 생활보조원실, 세탁실, 안내 및 등록실, 창고/청소도구실, 주차장, 화장실, 다목적 홀 등이 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식사서비스는 식사제공 및 식사배달, 식사보조 서비스를 포함하며, 목욕은 탈의/착의, 목욕, 그리고 외상노인의 경우 기계식 욕조사용서비스를 지원한다(김상범, 1999; 정지영·장승재, 2002). 식사공간으로는 식당, 휴게실, 거주실 등이 이용되는데, 시설 노인 중 이동이 힘든 일부 노인은 개인 거주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거동 가능한 노인은 식당까지 이동하며, 또 휴게실에서 모두 모여 식사를 할 수도 있다. 한편, 목욕은

전체욕실이나 거주실 내 부속 세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목욕은 1인당 주 1-2회 정도 실시되고, 주로 생활지도원이 맡아서 하지만 목욕과정의 혼잡함 등으로 인해 전 직원이 투입되는 실정이다(이응숙, 2003; 최승자, 2000).

2.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식사 및 목욕 공간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4에서 규정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세면장 및 목욕장에 대한 설비기준으로는 미끄럽지 않고, 전신이 잠기지 않는 욕조와 보조손잡이, 그리고 자동온도조절장치 등이 있으나 식사공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는 비교적 상세한 법규정을 세워놓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식당은 거주자 1인당 3.0m²이상, 미국은 0.9m²이상으로 하고 있고, 욕조와 샤워기를 20인당 최소 1개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실에서 최대 30m 이내에 욕조를 설치하고, 이 중 50% 이상이 장애인 사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는 등 기타 기기 및 설비, 마감 재료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문창호, 2003).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식사 및 목욕 공간계획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식사공간보다는 목욕 공간, 특히 전체목욕실에 관한 것이 많았다. 각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식사 및 목욕공간이 거주실과 다른 층에 위치할 경우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등이 부담되므로 같은 층에 설치해야 동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거주층이 2개 층 이상일 경우 식사공간은 각층에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야 하고, 세탁물의 손쉬운 이동을 위해 욕실과 세탁실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김정환, 1999; 최승자, 2000).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구성을 연구한 최승자(2000)는 식당 가까이 대기공간과 같은 휴게실을 마련하여 식당을 가기위해 기다리는 노인을 배려해야 하고, 류태선(1999)은 식당의 위치가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세면대 이용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욕실공간은 보통 탈의공간과 이미용공간이 포함되는데, 이외에도 입욕대기 및 모발건조를 위한 휴게 공간(류태선, 1999), 입욕전과 입욕 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대기공간 및 착의/휴식공간 마련(김석현 외, 1996), 각종 수납공간과 스트레처 대기공간, 그리고 온도조절 및 오물처리시스템, 환기설비 등(김정환, 1999)이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 욕실의 면적은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10-15명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크기, 그리고 스트레처 2대 정도가 출입 가능한 출입구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모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노인의 요구사항과 요양치료목표와의 관계를 결부시킨 정무웅·정혁진(2003)은 식당의 스케일이 작을수록, 그리고 식당이 분산 배치되어 있을수록 노인의 동요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욕실에서는 접근의 용이성과 안전을 과제로 하되, 지나친 기계장치의 사용을 줄여 노인들에게 위협과 굴욕감을 줄여야하고, 독립된 앨코브로서의 착의공간을 권장하고 있다.

<표 1>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요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시설허가	2002년	2001년	2003년	2002년	2001년
대지면적(m ²)	5,555	9,720	3,841	3,140	-
건축면적(연면적, m ²)	1,005.9(1,908.3)	1,636.2(2,041.2)	735(1,983.1)	871.4(1,705.9)	(1,824.1)
건물층수	3층	2층	3층	2층	2층
입지유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도시근교형
거주층	2층	1층	2, 3층	2층	1, 2층
거주층 복도유형	중정형복도+중복도	중정형복도	회랑복도	중복도	이중복도

* 노인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이 같은 대지에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만의 정확한 대지면적이 나와 있지 않음

III. 연구방법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식사 및 목욕공간의 작업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전라북도 5개 시(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지역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를 선정하였다.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노인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서비스가 일과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설 편의에 의해 서비스 제공형태가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서비스의 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된 지 최소 1년이 지난 시설 중 연구를 허락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3년 12월 중 사전답사를 실시, 담당자(서비스제공 대표 팀장, 생활지도원 대표 등)를 인터뷰하여 식사 및 목욕 시간동안의 대략적인 작업흐름과 공간을 조사한 뒤, 시설의 하루 일과표 및 도면 등을 제공받았다. 담당자와의 협의 후, 목욕서비스의 경우 전체목욕서비스가 실시되는 날, 그리고 식사서비스는 시설 내 특별행사(예: 생일잔치, 경로잔치, 기타 이벤트 등)로 인해 식사시간과 직원 및 노인의 행동이 방해받지 않는 평상시와 가장 근접한 날을 추천받아 해당 날짜에 관찰답사를 실시하였다. 4명의 관찰자가 2004년 1월 12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시설 당 2일씩(점심식사 서비스 관찰 1일, 전체목욕 서비스 관찰 1일¹⁾), 총 10일 동안의 관찰답사가 실시되었는데, 식사의 경우 거주자의 식사를 위한 이동 단계에서부터 식사 후 정리단계까지, 목욕의 경우 직원들의 목욕준비단계에서 목욕 후 세탁물 정리까지의 작업흐름과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 인원 및 공간을 기입하였다. 식사서비스는 가장 많은 직원과 노인이 참여하는 점심시간을 선택하여 각 시설별로 식사시간과 식사 전 준비 및 식후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약 2시간~3시간 동안 관찰이 진행되었으며, 목욕은 목욕 준비시간부터 목욕 후 정리시간 까지 약 2시간 30분~3시간 30분 정도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담당자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서비스가 여러 공간에서 시행된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본 조사 시 관찰자를 미리 각 공간에 대기시켜 공간

1) 단 하루씩의 관찰로 조사를 끝낸 것은 식사와 목욕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서비스의 경우, 제공형태나 과정에 있어 변수가 적다는 담당자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힌다.

별로 각 단계별 작업흐름을 조사하였다²⁾.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설의 식사 및 목욕 서비스 시간, 장소, 위치, 공간 구성, 그리고 면적 등을 정리하여 연구 분석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식사 서비스의 작업 흐름을 조사하여 식사 준비단계에서 식사 후 정리 단계까지의 소요시간, 발생장소, 기타 특이사항 및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였다.

셋째, 목욕 서비스의 작업 흐름을 조사하여 직원들의 준비단계에서 목욕 후 세탁물 정리 단계까지의 소요시간, 발생장소, 인원, 기타 특이사항 및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였다.

IV. 결과해석

1. 조사대상 시설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요

조사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의 건축개요를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사시설이 최근 3년 내에 허가를 받았으며 2층, 혹은 3층의 건물이었다. 면적은 B시설이 9,720m²의 대지면적에 1,636m²의 건축면적과 2,041m²의 연면적으로 가장 넓었는데, 이는 주위가 평지인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위치하여 비교적 넓은 대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다른 시설의 경우 관리공간과 거주자공간이 층별로 완벽하게 분리된 반면, B시설은 모두 1층에 위치시키고 2층은 숙식실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건축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입소노인의 거주층은 B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2층을 주 거주층으로 두고 있으며, C시설과 E시설은 3층, 혹은 1층

2) 담당자와의 사전인터뷰를 통해 서비스의 이동경로를 미리 추측하여 작업이 발생하는 공간별(예: 주방, 휴게실, 엘리베이터 앞, 복도 등)로 미리 관찰자를 배치하여 작업흐름에 따라 함께 이동하도록 하였다. 각 관찰자는 각 단계에서 인원수 및 좌석배치, 경과시간, 이동경로 및 동선, 그 외 긴급 상황 파악 등으로 임무를 구분하여 기입하였다.

의 일부분을 거주공간으로 또한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 거주층의 복도유형은 시설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A와 B시설의 경우, 거주층 가운데 중정을 둘러싼 중정형복도가 있으며, A시설은 여기에 중복도가 결합된 형태이고, D시설은 중복도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C시설은 형태적으로 중정형 복도와 비슷하지만 1층의 중정이 천정까지 개방되어 있는 회랑복도이며, E시설은 2개의 회랑복도가 일렬로 위치한 이중복도를 가지고 있었다.

2) 조사대상 시설의 직원 및 입소노인 현황

조사대상 시설의 직원현황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1항 관련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요양시설의 직원 기준"과 비교하여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법규측면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간호사 인원으로 입소자 20인당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입소현원(표3 참조)과 비교하여 대부분 1-2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B시설은 현원 70명에 1명의 간호사만을 두고 있어 긴급 상황 시의 전문적인 대처가 우려되었다. 또한 인원측면에서 간호사 배치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

설이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부재가 예상되며, 이는 거주노인에게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원배치 기준을 시설의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사료된다. 사무원은 시에서 설립한 E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서 사무원을 두지 않았고, B시설과 E시설이 영양사 대신 조리원 만으로 주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생활복지사와 관리원 등의 직원을 두지 않고 있었다. 전문요양시설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입소노인 케어에 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법규정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 시설의 입소노인 현황은 <표3>과 같았다. 입소정원은 50~70여명 사이로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었고, E시설의 경우 단기보호 거주노인으로 인해 정원보다 많은 노인이 입소하고 있었다. 성별로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이, 연령은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많았다.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로는 전문요양시설의 특성상 치매와 중풍이 많았으며 그 외 외상노인과 기타질병으로 근골격 장애, 시청각장애, 소화기장애, 혹은 부

<표 2> 조사대상 시설의 직원현황

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기타/관리인
입소자 30인 이상 시설기준	1	1	1	1	입소자 20인당 1인	1	입소자 3인당 1인	1	1	1	1	1
A시설	1	1	-	1	1	1	16	-	-	1	1	-
B시설	1	1	-	1	1	1	28	-	1	1	1	1
C시설	1	1	1	1	2	1	20	-	1	2	1	1
D시설	1	1	-	1	1	1	19	-	1	1	1	-
E시설	1	1	1	1	3	1	28	1	-	1	1	4

<표 3> 조사대상 시설의 입소노인 현황(2003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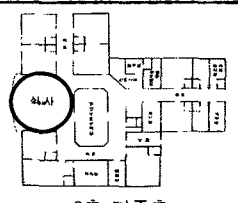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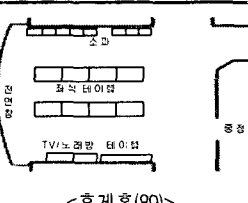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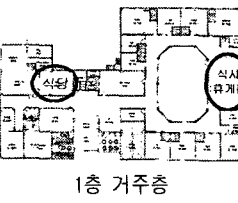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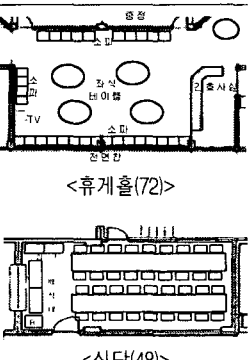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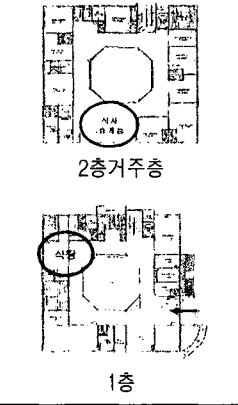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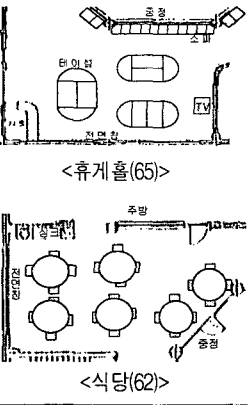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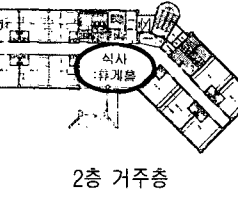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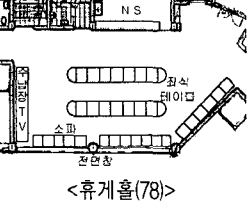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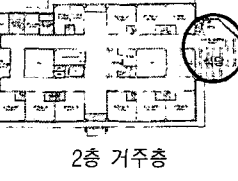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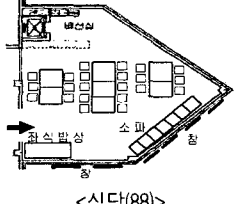
시설	입소정원 (현원)	성별		연령						건강				보행가능정도		
		남자	여자	-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외상	치매	중풍	기타	보행불가능	보조필요
A시설	50(49)	8	41	4	13	24	8			16	33			26(53%)	12(24%)	11(22%)
B시설	70(70)	19	51	11	34	25				47	23			26(37%)	22(31%)	22(31%)
C시설	50(48)	6	42	4	17	20	7	13	16	16	3			16(33%)	25(52%)	7(15%)
D시설	55(53)	9	44	1	3	11	12	8	9	8				22(42%)	8(15%)	23(43%)
E시설	72(76)	8	68	10	22	44				52	15	9		25(33%)		51(67%)

<표 4> 조사대상 시설의 식사 및 목욕서비스 시간표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A시설	기상/식사		세안	휴식	목욕/간식	휴식/운동/이동		식사/휴식	프로그램/오락		운동/이동	식사/휴식
B시설	기상/세면		식사	건강체크	목욕/법회/진료/물리치료/산책/인지, 회상, 명상요법			식사/휴식	프로그램/레크레이션/진료			식사/휴식
C시설	기상/세면/명상	식사/양치		청소/운동	건강체크	진료/목욕/요리/체조/오락	식사/휴식		프로그램	휴식/개별운동/염분	식사/양치	정리/TV
D시설	기상/식사		세안/휴식	청소/정리	목욕/휴식/물리치료		식사/휴식		프로그램/오락/물리치료		식사/양치	휴식
E시설	기상/식사		세면/목욕/청소/정리		프로그램		식사/휴식		휴식/물리치료		식사	휴식

합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다. 식사 및 목욕 공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가능정도를 살펴보면,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노인이 33%~53%를 차지하였으며, 보행 시 보조가 필요하거나 보행이 가능한 노인은 44%~67%로 보행이 불가능한 노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았다.

<표 5> 식사 공간의 위치 및 구성

	식사서비스 공간의 위치	식사서비스 공간구성 ³⁾
A 시설	 2층 거주층	 <휴게홀(89)>
B 시설	 1층 거주층	 <휴게홀(72)> <식당(48)>
C 시설	 2층거주층 1층	 <휴게홀(65)> <식당(62)>
D 시설	 2층 거주층	 <휴게홀(78)>
E 시설	 2층 거주층	 <식당(88)>

3) ()안 숫자는 각 식사 공간의 면적, 단위: m²

3) 조사대상 시설의 식사 및 목욕서비스 시간

조사대상 시설의 일과표 중 식사 및 목욕서비스 시간을 <표4>와 같이 표시하였다. 아침식사는 7시 정도에 시작하여 8시 30분까지 모두 끝나며, 점심식사는 12시를 전후하여, 저녁식사는 4시 30분에서 5시 정도에 시작하도록 계획되었다. 목욕은 대부분 오전 중에 실시되는데, 아침식사와 양치가 끝난 후(A, E시설), 혹은 직원들의 아침청소 및 오전 촉탁의 건강체크가 끝난 후(B, C, D시설)인 9시 30분~10:30분 정도에 시작하여 점심식사 이전에 모두 끝나게 되는데, 시설별로 하루에 목욕하는 노인의 수와 목욕빈도, 목욕 공간 등에 따라 그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 노인 1인당 목욕빈도는 동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A시설은 하루에 입소노인 약간 명씩 매일 목욕실이 이용되고 있었고, 거주실 부속 화장실을 이용하는 E시설도 매일아침 노인들의 목욕이 이루어졌다. 반면, 남자노인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편인(19명) B시설은 성별로 분리하여 일주일에 2회, 다른 시설은 일주일에 1회를 전체목욕일로 하거나, 임의로 분리하여 일주일에 2회 정도 시행하고 있었다.

2. 식사공간과 작업흐름

1) 식사공간의 위치 및 구성

<표5>는 식사서비스 공간의 위치와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식사는 거주층의 휴게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보행이 자유로운 노인 혹은 식당과 거주실이 동일층에 있는 경우(E시설) 식당도 이용하고 있었다.

먼저, 식사공간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A시설과 D시설은 모두 거주층인 2층의 휴게홀로 식사공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되도록 입소노인이 휴게홀로 나와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고, 1층의 식당은 직원과 방문객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E시설은 거주노인이 모일만한 휴게홀이 없으나, 거주층의 한쪽 끝에 위치한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B시설은 거주공간⁴⁾에 위치한 휴게홀과 사무관리공간에 위치한 식당을 동시에 이용하였는데, 식당은 주로 보행이 자유로운 노인이 이용하고, 직원은 노인의 식사가 모두 끝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C시설도 휴게홀과 식당을 모두 이용하고 있었는데, 휴게홀이 거주층인 2층에 위치한 것과 달리 식당은 1층에 위치하였다. B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행이 자유로운 노인이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노인과 직원이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여 보다 자유롭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공간에 있어서 휴게홀은 입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오락, 기타 공식 행사가 열리거나, 노인들이 나와 앉아 담소를

4) B시설은 도면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거주공간으로 거주실을 비롯한 목욕실, 휴게실이 있고, 왼쪽으로 사무관리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경계선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표 6> 식사 서비스 작업 흐름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식사인원 및 장소	휴게홀: 44명 거주실: 5명	휴게홀: 22명 식당: 13명 거주실: 14명	휴게홀: 35명 식당: 9명 거주실: 7명	휴게홀: 44명	<식당> 식탁: 17명 바닥: 8명 소파: 1명
1인당 면적*	2.02m ²	3.27m ²	1.85m ²	1.77m ²	3.38m ²
① 이동	휴게홀: 3분	체조시간 이용하여 식사공간으로 이동 : 10분	휴게홀: 20분	휴게홀: 3분	식당: 5분
② 대기 ⁵⁾	휴게홀: 1시간	-휴게홀: 5분 -식당이용 노인은 출입문 앞 소파에서 대기: 5분	-휴게홀: 대기시간 이용 아침점진 45분 -식당이용노인: 9분	휴게홀: 약 30분	식당 8분
③ 카트이동	엘리베이터이용	-주방->휴게홀 카트이동: 1분 -식당이용 노인은 보행이동: 1분	-휴게홀: 덤웨이터 -식당: 보행이동	엘리베이터이용	덤웨이터 이용
④ 배식	휴게홀/거주실: 7분	-휴게홀/거주실: 5분 -식당: 2분	-휴게홀: 3분 -거주실: 2분 -식당: 수시	휴게홀: 2분	식당/거주실: 5분
⑤ 식사	휴게홀/거주실: 25분	- 휴게홀/거주실: 15분 -식당: 15분	-휴게홀/거주실: 20분 -식당: 25분	휴게홀: 약 15분	식당/거주실: 10분
⑥ 이동	휴게홀: 3분	-휴게홀: 자유이동 -식당->거주실: 자유보행	-휴게홀/거주실: 5분 -식당-->2층: 3분, 단체 이동(직원보조)	휴게홀: 5분	식당--> 거주실: 15분
⑦ 정리	휴게홀: 15분	휴게홀: 1분			식당: 7분
전체적인 특징 및 문제점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지루함	별다른 문제없음	-생활자유도별로 방 분리가 되어 카트이동이 원활함 -휴게홀이 작아 카트 이동시 휠체어 이용 노인과 충돌위험 있음	-대기시간이 길어 지루함 -승강기와 휴게홀의 거리가 가까워 카트의 이동이 적음 -공간이 좁아 배식 직원들끼리 자주 부딪치고 매우 혼잡함 -테이블 당 식사 인원이 많아 불편함	식탁간의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려움

* A~D시설의 경우 휴게홀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1인당 식사면적, E시설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1인당 식사면적을 계산하였음

** 거주자 이동과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순서가 바뀌어 시행되기도 하고(D시설), 각 거주노인의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정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C시설)

*** 식사서비스는 모든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노인 1인당 소요시간이 아닌 각 단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음

나누고 수면을 취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대부분 좌식 테이블과 소파, TV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B와 C, D 시설에는 휴게홀 가까운 곳에 간호사실(N.S.)이 위치하여 수시로 노인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사시에는 바닥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원형과 장방형의 좌식테이블이나 벽 쪽으로 길게 배치된 소파에 앉아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휠체어 이용노인은 소파옆이나 빈 공간에 자리를 잡아 간이식판을 이용하였다. 휴게홀의 면적은 65-89m², 약 20평~27평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B시설과 C시설에서 이용되는 식당은 긴 장방형, 혹은 원형의 입식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고, 배식대에서 식사를 받거나 직원의 배식으로 식사를 하였다. 식당의 면적은 B시설의 경우 48m², C시설은 62m²로 B시설이 좁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직원과 노인의 식사가 시간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E시설의 식사공간인 식당에는 좌식테이블이 입구 쪽 벽에 쌓여져 있으며 식당 가운데에 식탁과 의자가, 창쪽으로는 소파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식사시간에는 쌓여져있는 좌식테이블을 모두 내려 식당 입구쪽 바닥에 배치하고, 휠체어

노인들은 빈 공간에서 간이식판을 이용하거나 식탁의 의자를 뺀 뒤 식탁에서 식사를 하였다. 입구 반대쪽 구석에는 덤웨이터를 설치하여 1층에서 식사를 올리거나, 다 쓴 식판을 1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2) 식사서비스 작업 흐름

하루 세 번의 식사시간 중 가장 많은 수의 직원과 노인이 활동하게 되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사공간에서의 작업흐름을 관찰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표6>과 같이 정리하였다.

비교적 넓은 휴게홀을 가진 A와 D시설은 휴게홀에서 40명 이상이 식사를 하였고, 특히 D시설은 입소노인 전원이 휴게홀

5) 대기시간은 모든 노인이 이동한 후 카트이동 직전까지의 시간으로, C시설과 같이 모든 노인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0분 정도로 긴 경우, 노인 개인의 대기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된다. 아울러 C시설에서 식사 전 대기시간에 시행되는 아침점진은 정규적으로 매일 아침 간호사(혹은 촉탁의) 순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로 나와 식사를 한 것이 특징이다⁶⁾. 입소노인 중 일부가 식당을 이용하는 B와 C시설은 각각 22명과 35명이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당은 B시설의 경우 13명, C시설은 9명이 이용하였다. 휴게실이 협소한 대신 각 거주층 끝에 넓은 식당이 위치하여 노인 전원이 거주층의 식당을 이용하는 E시설은 식당 내의 식탁이용노인이 17명, 바닥의 좌식테이블 이용은 8명, 그리고 소파위에서 식사를 하는 노인도 있었다. 휴게실에서 식사하는 노인 1인당 휴게실의 면적을 살펴보면, B시설이 3.27m²로 가장 넓었고, D시설이 1.77m²로 가장 좁았으며, 다음으로 C시설이 1.85m²로 좁았다.⁷⁾

식사서비스 작업의 흐름은 모든 시설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식사시간이 되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직원의 보조에 의해 각자의 식사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일단 자리를 잡은 뒤 식판을 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때까지 직원은 노인들에게 개인 냅킨을 입히고, 테이블보를 덮는 등의 식사준비를 한다. 식사시의 좌석은 보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노인들이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는 반면, 직원의 보조를 받는 노인들은 직원이 앉히는 위치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주방으로부터 식사가 도착하면 직원들의 배식에 의해 식사를 하게 되고, 식후 노인들은 각자의 거주실로 이동하거나, 그대로 휴게실에 남아 휴식을 취한다. 휴게실에서 식사하는 노인이 많은 시설(A, D시설)은 배식시에 생활지도원 뿐 아닌 전체직원이 동원되는 실정이며, 식사 후 직원은 노인들의 이동을 보조하거나 식판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보내게 된다.

각 작업단계 흐름별로 시설별 특징을 살펴보면, B시설의 경우 식사를 위한 거주노인 이동단계 직전에 체조프로그램 시간을 배치하여 노인이 모두 휴게홀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직원 몇 명은 식사준비를 하고 다른 몇 명은 체조를 진행하면서 약 10여분 간 휴게홀에서 체조를 하고 복도를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동 및 대기시간을 보내도록 하였다. 대기시간은 A시설과 D시설의 경우, 각각 1시간, 그리고 30분으로 길게 나타나 노인들이 지루해 하였는데, 휴게홀에서의 식사인원이 많아 관리의 편의를 위해 미리 노인을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B시설 및 C시설과 같이 대기시간 중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단체 프로그램, 혹은 건강검진 시간을 마련하거나 건강상태에 따라 식사장소를 분산시켜 노인이 크게 지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B, C시설과 같은 중정형이나 회랑형복도의 경우 복도면적이 넓고, 또 복도를 천천히 돌면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각 거주실과 복도 등에 분산되어 있던 노인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B시설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출입문⁸⁾ 앞에서 대기

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휴게홀 식사노인을 위한 카트가 들어옴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 식당으로 가고, 식사가 끝난 뒤 자율적으로 거주공간으로 돌아오게 된다. C시설의 경우 식당이 거주층과 다른 1층에 있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식당이용노인을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고, 식사 후에는 다시 직원의 보조로 이동하게 된다.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위해 식사 직후 바로 거주층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식당 가까운 곳에 직원의 관찰이 가능한 휴게공간이나 실내 산책실, 정원 등을 마련하고 이용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시설의 일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권장된다. 식사의 운반은 A, B, D시설의 경우 카트를 이용하였고, 주방이 거주층과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통해 카트를 이동하였다. 한편 C와 E시설은 덤웨이터를 이용하여 1층의 주방에서 2층으로 식판을 이동시켜 거주층의 직원이 카트이동을 위해 미리 주방에서 대기하거나, 주방직원이 카트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C시설은 노인들의 건강상태 별로 거주실이 분리되어 있어 와상노인의 거주실로 운반해야할 식판이동시에 짧은 동선과 원활한 흐름을 보였으나, 좁은 휴게실 면적(65m²)으로 인해 카트 이동시 빈 공간에 자리 잡은 휠체어 이용노인과의 충돌위험이 높았다. 한편 D시설도 배식직원들끼리 자주 부딪치고 테이블 당 노인 인원이 많아 불편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휴게실 면적은 78m²로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휴게홀에서 식사를 하는 노인이 44명으로 A시설(휴게실 면적: 89m²)과 함께 가장 많고, 복도의 형태가 중복도형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처럼 회랑 혹은 중정 벽에 소파를 설치할 수 없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식사시간은 20분 이내였고, 식사 후 거주자 이동과 정리도 20분 내외로 끝나, 식사 배식 후 소요되는 총 시간은 모두 40분 내외였다.

3. 목욕공간과 작업흐름

1) 목욕공간의 위치 및 구성

<표7>은 목욕서비스 공간의 위치와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목욕은 건강상태가 안 좋은 노인을 제외하고 전체목욕실에서 이루어지는데, D시설의 경우 1층에 위치한 목욕실과 2층인 거주층의 세척실을 격주로 이용하였으며, E시설은 거주실 부속 화장실을 목욕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목욕공간의 위치를 살펴보면 A와 B, 그리고 C시설은 거주실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목욕실을 이용하여 입소노인의 이동과 직원의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 D시설은 격주로 2층 거주실 가까운 곳의 세척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1층의 목욕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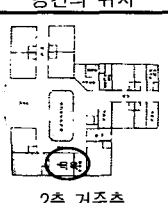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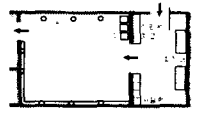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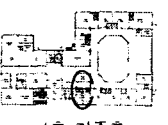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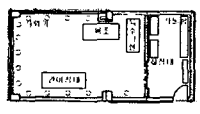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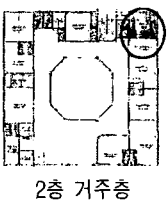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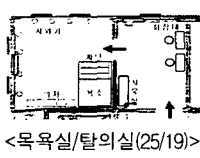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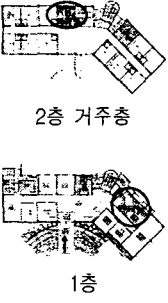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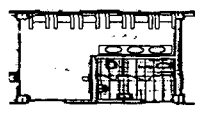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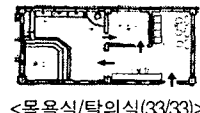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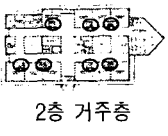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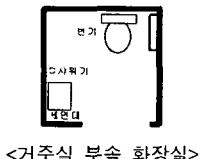
6) D시설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건강이 크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 휴게홀로 나와 식사를 하도록 시설차원에서 유도하고 있었다.

7) 노인 1인당 휴게실 면적은 휴게실 바닥의 가구 및 실비를 포함한 넓이로 실제 유효면적과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8)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B시설은 관리사무공간과 거주공간으로 크게 분리되어 있는데, 경계선의 출입문은 평상시에 잠겨 있으나 식사시간에는 개방해 놓아 노인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서 입욕을 하고 있었으며, E시설은 거주층에 전체 목욕실이 있으나 주로 재가노인을 위하여 매주 2회 이용되고 있었으며 입소노인은 모두 거주실 부속 화장실을 목욕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표 7> 목욕 공간의 위치 및 구성

	목욕서비스 공간의 위치	목욕서비스 공간구성 ⁹⁾	
A 시설	 2층 거주층	 <목욕실/탈의실(33/16)>	-시행빈도: 매일 -1인당 시행빈도: 일주일에 한 번
B 시설	 1층 거주층	 <목욕실/탈의실(66/18)>	-시행빈도: 일주일에 두 번 -1인당 시행빈도: 일주일에 한 번
C 시설	 2층 거주층	 <목욕실/탈의실(25/19)>	-시행빈도: 일주일에 한 번 -1인당 시행빈도: 일주일에 한 번
D 시설	 2층 거주층 1층	 <세척실(24)>  <목욕실/탈의실(33/33)>	-시행빈도: 일주일에 두 번 -1인당 시행빈도: 일주일에 한 번 (목욕실과 세척실 격주로 이용)
E 시설	 2층 거주층	 <거주실 부속 화장실>	-시행빈도: 수시 -1인당 시행빈도: 일주일에 두세번

목욕실은 탈의실겸 미용실이 부속되어 있었다. 탈의실 입구는 대부분 미닫이 혹은 미세기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B시설의 경우 안쪽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이용상의 불편함이 예상되었다. 탈의실에는 대부분 수건, 옷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사물함과 미용을 위한 화장대 및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A시설의 경우 입구 쪽에 적외선 치료기, D시설은 찜질방을 설치해 놓았다. 탈의실면적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탈의 및 갥

의 노인, 그리고 직원이 함께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목욕실 못지않은 유효 작업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A시설의 경우 16m²(5평정도)이고, 다른 시설도 18m²~19m²정도(6평)로 나타났다. 화장대 및 여러 가구와 설비를 제외하면 실제 유효면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탈의실에서 목욕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대부분 접이문 혹은 미세기문으로 되어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다. 벽 쪽으로 여러 개의 샤워기와 목욕용 의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A시설을 제외한 B, C, D시설은 욕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입소노인의 요실금 문제로 인해 매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A와 B시설은 중증환자를 위한 특수목욕시설(기계욕조) 및 스트레처(간이침대)를 배치하였으나, 다른 시설의 경우 중증환자는 거주실 부속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D시설은 욕실 한쪽에 번기를 두어 목욕 시 입소노인들의 배변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목욕실의 면적은 A, C, D시설이 25m²(7.7평)~33m²(10평)정도로 탈의실 보다 약간 넓었고, B시설의 경우 66m²(20평)정도로 넓은 목욕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중증환자의 목욕 등을 고려하여 본래 탈의실이었던 공간까지 목욕실 면적으로 넓힌 결과였다.

한편, D시설의 세척실의 원래 용도는 노인들의 신속한 배변처리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으나 목욕실이 1층에 있어서 격주로 세척실에서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면적은 24m²(7.4평)정도로 좁은 편이었으며, 안쪽으로 세대대가 일렬로 부착되어 있어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유효공간은 입구 쪽에 샤워기가 한개 부착되어 있는 곳으로 매우 좁았다. E시설은 거주실 부속 화장실에서 벽에 부착된 샤워기를 이용하였는데, 한 번에 직원 한명과 노인 한명이 들어가 목욕이 이루어졌다.

2) 목욕서비스 작업 흐름

오전 전체목욕시간에 이루어지는 목욕서비스를 관찰하여 목욕 준비단계에서부터 목욕 후 정리까지의 작업흐름을 <표8>과 같이 정리하였다.

B시설에서 한번에 가장 많은 인원인 40명이 목욕을 하였고, 매일 약간 명 씩 나누어서 하는 A시설이 한번에 7명으로 가장 적었다. D시설은 25명 정도가 거주층의 세척실에서 목욕을 했고, 5명 정도는 1층의 목욕실을 이용하였다¹⁰⁾. 한편, E시설은 거주실 당 2-3명의 노인이 목욕을 하였다. A와 B시설에서 각각 1명씩의 중증와상노인이 기계욕조를 이용하였다.

목욕서비스의 작업흐름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수건 및 갈아입을 옷 준비단계, 그리고 거주노인 이동에서 시작된다. 보행이 자유로운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걸어서 목욕실 앞까지 이동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직원들의 보조를 받았고, 와상노인의 기계욕조를 이용한 목욕도 함께 이루어지는 A와 B시설의 경우, 이동 침대에 누운 채로 이동하였다. 이동이 끝나면 목욕

10) 세척실과 목욕실은 격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절기에는 1층 목욕실이 자주 이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필요할 경우에만 1층 목욕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9) ()안 숫자는 각 목욕 공간의 면적, 단위: m²

<표 8> 목욕 서비스 작업 흐름

	A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E시설
목욕인원	7명	40명	27명	30명 (목욕실: 5명, 세척실: 25명)	거주실 당 2-3명
① 준비	거주실->탈의실 약 1분~6분소요 (휠체어, 보행보조기, 이동침대, 도보이용)	휠체어, 이동침대, 도보이용	-목욕실/거주실: 5분	-목욕실: 20분 -세척실: 1분	-거주실: 10분
② 이동			-거주실/복도->목욕실: 2분	-2층->탈의실: 5분 -세척실 앞 복도, 2'4분	-침대->부속욕실: 2분
③ 대기	-목욕실: 기계욕조이용 중증노인, 7분 -탈의실: 경증, 중경증 노인, 16분	-복도: 20명, -소파: 15명, 30분~1시간	-목욕실: 5~10분 -탈의실: 5~10분 -복도소파: 10분		-부속욕실 앞, 혹은 침대 : 13분
④ 탈의		탈의실: 3분 목욕실: 기계욕조노인, 5분	-탈의실: 1~2분	-탈의실 : 5분 -세척실 앞 복도: 2~3분	-부속욕실: 1분
⑤ 목욕	-중증: 기계이용, 33분 -중경증: 18분 -경증: 10분	목욕실: 6-10분, 기계욕조 이용 시 35분	목욕실: 1인당 10분	-목욕실: 30분(욕조이용) -세척실: 4-6분	-부속욕실: 10분
⑥ 건조/ 착의	-목욕실: 기계욕조이용 중증노인, 4분 -탈의실: 경증, 1-5분	탈의실: 1~2분	탈의실: 5(보조)~15분(혼자)	-탈의실: 5분 -세척실 앞 복도: 3'5분	-부속욕실: 5분
⑦ 이동	목욕실->거주실: 5분~20분, 휠체어 노인만 직원이 보조	-기계욕조 이용 시 목욕 직후 수건만 덮고 이동, -경증은 자유이동, 20초	탈의실->거주실/복도: 1분	-탈의실->2층: 보조이동, 1분 -세척실->휴게실, 거주실: 개별이동, 1분	-부속욕실-> 침대: 1~2분
⑧ 정리	세탁실: 수시	목욕실: 5분 세탁실: 수시	목욕실: 10분 정도	세탁실/ 1층식당 (살는 빨래)	1층 세탁실로 세탁물 이동
전체적인 특징 및 문제점	-탈의공간의 혼잡, 재구성 필요한 -목욕 후 이동 노인을 위한 Seating공간 필요	-탈의 공간과 출입문이 좁음 -탈의 공간 대기 노인이 여닫이문에 자주 부딪힘 -탈의 공간 휠체어 처리 혼잡	-탈의공간의 혼잡 -출입문이 좁아 스트레처 진입 불가능 -목욕실 가까이 소파 쪽 매우 혼잡함 -목욕 전후의 노인 구별이 어려움	-세척실 앞 복도의 혼잡함, -신체노출 -좁은 세척실 -노인이동수단 필요 -탈의/갱의 옷의 구별이 어려움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직원 1명이 2-3개 거주실 노인의 목욕을 담당하여 전체적으로 목욕 시간이 오래 걸림 -시트에 세탁물을 담아 끌고 가는 등 세탁물 이동기구가 필요함

* 목욕은 식사와 달리 모든 목욕대상 노인에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단계별로 약간 명씩 이루어지므로 목욕서비스의 단계별 소요시간은 노인 1인이 각 단계에서 소요하는 시간의 대략적인 평균을 측정하였음
 ** 가끔 ③대기와 ④탈의의 순서가 바뀌기도 함(D시설)
 *** 탈의실에는 항상 3-4명이 대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욕실에는 4~5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음

실 앞에서 대기하거나, 일단 탈의실에 들어가 탈의 후 대기를 하게 되고, 차례가 돌아오면 목욕을 한 뒤, 건조 및 착의를 하게 된다. 그 후, 본인이 원하는 장소, 즉 거주실이나 휴게실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며, 목욕이 끝난 후 직원들이 욕실 정리를 하면서 목욕서비스가 끝나게 되는데, 목욕 중 나오는 세탁물은 바구니에 담아 직원이 수시로 세탁실로 이동시킨다.

작업단계별로 각 시설의 목욕 서비스 특징을 살펴보면, 거주 노인이 목욕실 쪽으로 이동한 후, A시설과 D시설의 목욕실 이용 노인은 모두 탈의실로 들어간 반면, 목욕인원이 많은 B와 C 시설, 그리고 D시설의 세척실 이용노인은 목욕실 혹은 세척실 앞 복도나 복도 앞 소파에서 먼저 대기를 하였다. 대기시간은 보통 10분 이내가 되었으나, B시설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이상이 걸려 노인들이 매우 지루해 하였는데, 이는 목욕대상 노인을 모두 동시에 이동시켜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또한 협소한 탈의실 면적으로 인해 복도와 소파가 목욕대기공간화 되었기 때

문이다. 거주실 별로 시간을 두고 노인을 이동시켜 대기시간을 짧게 하거나 탈의실 면적을 넓혀 탈의실에 대기공간을 만드는 등 목욕대기로 인한 복도나 소파의 혼잡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탈의실 입장 시 대부분 시설의 출입문이 이동침대나 휠체어가 출입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입구에서 다시 노인을 들어 이동시키는 등의 혼잡이 야기되었고, 특히 B시설의 여닫이문은 노인의 자율적 출입을 어렵게 하였고,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문을 열 때마다 탈의실에 대기하고 있는 노인과 충돌이 잦았다. 대부분 시설에서 탈의실의 혼잡이 지적되었는데, B시설은 휠체어 이용노인이 진입한 후 휠체어를 처리할만한 장소가 없어 좁은 면적의 탈의실 내 혼잡을 가중시켰다. 또한 D시설의 세척실은 탈의실이 따로 없어 복도에 칸막이를 둔 채 탈의를 하여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고 복도가 매우 혼잡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A시설과 B시설에서는 기계욕조를 이용하는 외상노인의 목욕을 실시하였는데, 두 시설 모두

이동침대로 노인을 이동하여 A시설의 경우 곧바로 목욕실로 들어간 것과 달리 B시설은 복도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약 30여분간 차례를 기다리도록 하였다. 탈의는 목욕실에서 한 뒤, 바로 목욕에 들어가는데 기계욕조 이용 시 직원들이 노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여 노인의 불안감을 없애고 있었다. 일반목욕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내외인 것과 달리, 기계목욕은 약 30여분이 걸리고 1인의 중증와상노인이 목욕 시 3-4인의 직원이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다른 시설들은 기계욕조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실 부속목욕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목욕 후, A시설은 목욕실에서 건조 및 착의를 하도록 하고 즉시 거주실로 이동시켰고, B시설의 경우 목욕 후 수건만 덮고 개인 거주실로 이동하여 건조 및 착의를 하도록 하였다.

목욕실 전체 인원은 직원 포함 10명 이내로 조절하고 있어서 면적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었으나, D시설의 세척실은 목욕이 아닌 노인들의 배변처리를 위해 계획된 공간이기 때문에 직원 2명과 노인 2명이 들어가도 공간이 비좁아 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목욕시간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보통 1인당 10분 내외의 시간이 걸렸고, 중증노인의 경우 1인당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D시설의 목욕실에서는 욕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30분의 시간이 걸렸다. 건조 및 착의는 대부분 탈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탈의실에서는 착의할 옷과 탈의한 옷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세탁물 발생시 즉시 따로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옷뿐만 아니라 탈의 후 대기노인과 목욕 후 착의할 노인이 구별이 안 되어 노인에게 목욕을 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탈의공간과 목욕 후의 건조 및 착의 공간을 가구나 설비, 알코브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분리하거나, 두 공간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할 것이라 사료된다. 목욕 후 이동은 노인이 개별적으로 하거나 직원이 보조를 해주는데, B시설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건조 후 목욕실을 나온 노인과 대기노인이 또한 구별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부속 욕실에서 목욕을 실시하는 E시설은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직원 1명이 2-3개 거주실 노인의 목욕을 담당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와상노인 이동시 다른 거주실 담당 직원의 보조를 받는 등 목욕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시설은 목욕과정 중 혹은 목욕이 완전히 끝난 후에 세탁물을 세탁실이나 주방으로 옮기는데, 각 공간이 목욕실과 동일 층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매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층에 세탁실 혹은 주방이 있고, 2층에 목욕실이 위치했을 경우, 세탁물을 2층에서 1층으로 자동적으로 이동처리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을 경우 직원들의 노동력을 좀더 거주노인의 편의에 쏟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중 가장 기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식사와 목욕 서비스 공간의 작업흐름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간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공간의 위치측면에서 노인의 거주실과 가까운 휴게실을 식사공간으로, 전체목욕실을 목욕공간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C시설과 같이 노인이 다른 층의 식당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있어 직원의 관리가 필요하였으나 거주층을 벗어나 외부공간과 다른 직원 및 방문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 식사공간인 휴게실은 대부분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좌식테이블이나 벽에 배치된 소파를 이용하였고, 목욕실은 탈의실과 이미용실이 부속되어 있었으며, 출입문은 미닫이 혹은 미세기문으로 하여 혼잡한 탈의실에서의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대부분 시설의 목욕실 내에는 샤워기와 욕조 등이 있었으나, 요실금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 욕조를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고 특수목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C, D, E시설의 경우 중증 장애노인의 목욕은 거주실 부속 화장실에서 실시되었다.
2. 식사공간의 작업은 거주노인의 이동, 대기, 배식, 식사, 식후 거주노인 이동 및 정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단계 중 하나는 A와 D시설의 이동 후 대기 단계로 대기시간이 30분~1시간 정도 지속되어 노인들이 매우 지루해 하였는데, B, C, E시설과 같이 이동이나 대기직전 일정한 운동 및 진료, 혹은 여가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동 및 대기시간을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C시설과 D시설은 넓지 않은 식사공간으로 인해 식사 중 배식직원과 노인, 혹은 노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고, 1인당 할당된 식사 공간이 좁아 불편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적인 측면에서 식사공간의 기준을 단순히 식당으로 하지 말고 다목적 공간이 식사공간으로 이용될 경우의 1인당 식사 공간 면적과 기타 구성설비 및 재료 등을 법규화 하여 엄격히 지켜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행이 자유로운 노인은 C시설과 같이 식당에서 방문자 및 직원과 함께 식사하도록 장려하여 획일적인 일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식사장소를 분산하여 휴게실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목욕공간에서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준비단계를 시작으로, 거주노인 이동 및 대기, 탈의, 목욕, 건조 및 착의, 이동, 정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목욕이 주중 하루에 모두 이루어져 목욕인원수가 많았던 B시설의 경우 긴 대기시간이 문제가 되었는데, 거주실 별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동시키거나 하루 목욕노인의 인원을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눠서 할 경우 탈의실 앞 복도나 소파가 붐비지도 않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도 없어지리라 사료된다. 전체목욕실을 이용하는 대부분 시설에서 목욕실보다 탈의실에서의 작업흐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출입문이 좁아 이동침대나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탈의실 출입구에 대한 엄격한 법규정이 요구되었으며, 탈의실내에서는 탈의노인과 착의노인, 그리고 보조직원, 휠체어와 같은 기기 및 사물함이 매우 혼잡하게 구성되어 탈의공간과 착의공간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외에 E시설의 경우 목욕공간과 세탁실간의 거리가 멀어 목욕 시 수시로 발생하는 세탁물의 이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 세탁실은 목욕실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5개 무료전문요양시설의 식사공간과 목욕공간을 대상으로 관찰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국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의 복도형태나 가구 및 설비배치,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형태에 있어 비교적 다양한 유형들이 관찰되어 각 유형별 장단점이 파악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무료전문요양시설에서 주어진 공간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 전반적인 조사가 작업의 흐름 관찰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각 작업공간을 세밀히 실측하여 원활한 서비스흐름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치수를 제시, 법규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4년 08월 30일
- 심사 일 : 2004년 09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19일

【참 고 문 헌】

- 김상범(1999). 노인서비스 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현 · 김현태 · 김선국 · 김광문(1996). 치매노인요양시설의 공용부분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병원건축학회지, 2(3), 71-81.
- 김정환(1999). 치매노인요양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남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200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태선(1999). 치매센터의 건축공간구성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창호(2003).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기준에 대한 기초적

-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0(2), 19-26.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유운선(2000).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의 건축 계획적 연구.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응숙(2003).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전주산업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맹식(2003).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군산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섭(2002). 치매노인 요양시설의 화장실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 장승재(2002).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따른 배치구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 논문집, 51 235-270.
- 최승자(2000).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hen, U. & Weisman, G. 정무용 · 정혁진 역(2003). 건축환경 디자인과 노인성 치매. 서울:기문당, 131-147.